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13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곽규택 · 조승환 · 박지원
김용태 · 유상범 · 신성범
김상훈 · 강대식 · 배준영
강승규 · 조지연 · 강명구
서천호 · 최은석 · 서범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 비용은 이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녹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의 설치·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

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확충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경우 그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경우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비용 부담) ①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u><단서 신설></u>	제39조(비용 부담) ① ----- ----- ----- ----- ----- ----- ----- ----- -----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 의 경우 그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의 부담으 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 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u><단서 신설></u>	③ ----- ----- ----- ----- ----- ---.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④ ~ ⑦ (생략)	<u>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경우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u> ④ ~ ⑦ (현행과 같음)
------------	--